

교육훈련 위탁계약서

본 계약의 ' (주) 위드컴 ' (이하 '고객' 이라 한다)과 '주식회사 모두의 러닝'(이하 '회사'라 한다)간에 '회사'가 취급하는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 위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범위)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지원구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우선지원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견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	훈련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정부지원 현금훈련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유료교육 훈련
계약기간	2022. 1. 1. ~ 2022. 12. 31.	훈련과정명	법정의무교육
훈련인원	3 명	훈련비용	12000
교육 담당자명 연락처,이메일	김민석대표 010-8998 / 4769 @ withcom.ne.kr	사업장관리번호 (고용관리번호 11자리)	모르시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.
결제방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계좌이체	전자계산서(연세) 발행 이메일	jakim @ withcom . ne.kr
훈련비용 납부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1형 : '고객'이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자기부담금만 '회사'에 납부 <input type="checkbox"/> 2형 : '고객'이 교육비(자기부담금+정부지원금)를 '회사'에 납부하고, 교육 완료 후 정부지원금 환급		

제2조(훈련 진행에 관한 사항) '고객'은 '회사'가 정하는 훈련시간에 위탁 훈련생들이 성실히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'회사'와 사전합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수료) '회사'는 훈련과정 인정상의 훈련 수료기준을 통과한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료 처리하고 수료증을 발급한다.

제4조(성실의무) 1. '고객'과 '회사'는 본 계약서 의거 원활한 훈련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 2.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'회사'의 귀책사유로 인정된 것에 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해 당해 훈련과정이 취소되어 '고객'이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훈련비용을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'회사'가 책임을 진다. 3. '고객'은 원활한 훈련비 지급을 위해 고용보험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. 4. '고객'은 소속 훈련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받지 않도록 주지시킬 의무가 있다.

제5조(통보의무) '고객'은 훈련생의 변동사항(휴직, 퇴직, 전보 등)발 생 시 즉시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제6조(해석 및 합의)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.

정부지원 현금훈련 이용약관	<p>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</p> <p>1.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훈련이 종료되어 회사가 정부지원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은 시점까지로 한다. 2.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</p> <p>1. 총 계약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전제 훈련비로 하며 '고객'은 훈련비용을 '회사'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 위탁 계약을 실시한다. 2. 고객은 정부지원금을 회사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것에 동의한다. 3. 자기부담금은 교육 훈련 전 선 지급(교육 개강일 7일전)되어야 하며, 교육 개강일 기준으로 훈련인원의 변동으로 변경 될 수 있다. 정부지원금은 교육 종료 후 미수료자 등의 발생으로 변동 될 수 있다. 교육 훈련 미수료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한 훈련생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및 1회에 한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, 고객은 회사에게 재수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4. 재수강 기간 종료 후에도 교육 미수료로 인해 정부지원금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, 해당 금액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이 회사에 추 가로 납부한다. 5. 재수강을 실시 하였음에도 수료하지 못한 훈련생의 정부지원금 미환급 비용은 자기부담금으로 간주하여 고객 이 회사에게 추가로 납부 한다. 6. 정부지원 한도초과,부정수급 등으로 환급 받지 못한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. 7. 고용보 험료 체납으로 환급이 지연된 경우 고객은 고용보험료를 지급 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, 체납이 지속되어 정부지원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다. 8. 훈련인원 확정 후 '자기부담금', 훈련 종료 후 '정부지원금'에 대해 '회사'는 '고객'에게 전자계산서를 발행한다.</p>
유료교육 훈련 이용약관	<p>제1조 계약기간 및 인원</p> <p>1. 계약기간은 훈련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계약일로부터 해당 계약년도 말일로 정한다. 2. 교육훈련 인원은 고객이 회사에 통보한 훈련생 명단을 바탕으로 훈련이 제공된 인원으로 하며, 수강취소기간(개강 후 7일 이내) 이후 확정된 인원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계약금액 및 지급</p> <p>1. 총 계약금액은 훈련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교육비이며, 교육 인원의 변경 시 자동 조정된다. 2. 회사는 교육훈련 종료일 로부터 7일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고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부터 7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.</p>

2022 년 11 월 14 일

[고객]

상호명 : 214-00-62812
 사업자등록번호 : 서울특별시 송파구 뚝섬동로 286
 사업장소재지 : (성동동, 코리야빌딩 2층)

대표이사

(주) 위드컴
 대표이사 서민

[회사]

상호명 : 주식회사 모두의 러닝
 사업자등록번호 : 272-81-01049
 사업장소재지 :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-15,
 6층 621~625호(가산동, 가산 하우스드 위치중타워)

대표이사

이영신

